

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

해당사유

-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(제2호)
-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 등을 판매하는 거래(제3호)
-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판매하는 거래(제4호)
-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특별법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법인, 각급 학교(제5호) 또는 후불식 통신판매업

소명내용 (판매품목 및 판매방식에 대하여 반드시 서술)

신고인 _____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미제출 대상임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